

2023년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인 **“PDF파일”**과 **“제출서류(공제내역 참조)”**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확인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대상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파트타이머, 외주사 직원, 일용직 제외)

2. 제출서류

2-1. 필수제출서류

①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해서 제출

②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공제내역 안내 참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1/15 OPEN예정)

- 각종인증서로 로그인=>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간소화 자료조회에서

-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중도입사자의 경우)하여

- 건강보험~기부금까지 14개의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금액이 반영

- 상단에 **“한 번에 내려 받기”**로 자료다운로드

- **“성명(주민번호)-20XX년도자료.pdf”파일 => 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추가제출서류(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② 2023년 입사자 중 2023년 동안의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제출

3.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부서별/지점별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

4. 제출기한: **2024년 1월 26일(금) 까지**

5. 기타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됨.**

6. 제출 E-mail : gosoa0903@hanmail.net / 메일 제목: OOO(성함) 연말정산 관련 서류

◆ 근로자 확인사항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예, 아니오 란에 간단하게 ✓로 체크하시고 확인자 서명, 날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NO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	성 함		부 서		핸 드 폰 번 호																																	
2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이신가요?																																					
3	2023년 12월 31일 현재 법적배우자가 있으신가요?																																					
4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신가요?																																					
5	3번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아래 항목에 추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1963.12.31.이전 출생), 직계비속(자녀)은 20세 이하(2003.1.1.이후 출생),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적용 가능합니다. *1. 소득금액 요건 : 100만 원 이하=>총급여 약3,333,333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총급여 5,000,000원 이하만 기본공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관계</th> <th>이름</th> <th>주민등록번호</th> <th>관계</th> <th>이름</th> <th>주민등록번호</th> </tr> </thead> <tbody>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이름	주민등록번호																																	
6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까?																																					
	부양가족 중 기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기초수급권자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부양가족 중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위탁아동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																																					
7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신 서류 외 기타 의료비(난임시술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며 추가제출서류로 제출했습니까?																																					
8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자료가 있습니까?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에 동의를 한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가 출력 가능하니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바라며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금액 요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도 공제가 가능하오니 해당 되는 부양가족이 있으시면 부양가족에 대한 동의를 홈택스에서 진행하여 간소화 자료 제출시 해당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번항에 기재한 부양가족만 가능]																																					
9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자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했습니까? ※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청년 90%, 청년외 70%)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동안 200만원 한도 - 대상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병역 포함, 한도6년)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 경력단절 여성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해당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 할 것 -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10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과 중도입사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시작월을 선택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자료를 출력·제출했습니까?																																					

NO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11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 ①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입니까?		
	② 2024.2.28.까지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 했습니까?		
	※ 참고로 연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불가하고 당첨의 사유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능하니 해지한 경우 공제가능여부를 알려주셔야 함.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자도 가능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를 모두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 (차입금과 주택의 명의로 따라 공제여부가 상이함으로 공제가능한지를 꼭 확인)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		
	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		
	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가 5억 원 이하입니까? 단, 2006년~2013년 이전 차입 : 3억, 2014년 이전 차입 : 4억 원이하입니까?		
	⑥ 2006.1.1.~2013.12.31.까지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이어야 하고 취득이후 세대 전원의 주택이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 그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하며, 2014.1.1.이후 차입분의 경우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됩니까?		
	⑦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세대구성원의 보유주택이 1채입니까?		
	⑧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까?		
14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입니까? ※ 주민등록등본에 구성원 모두가 연도중 무주택, 요건 충족시 세대원도 가능함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입니까?(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④ 전입신고한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		
	⑤ 임대인과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월세임대차계약서(주소지동일)를 제출했습니까? (건물이 매매되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 변경전과 후의 2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⑥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월세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습니까?[2023년 월세액 총액 : ₩]		
15	2023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 (※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을 제출하셔야 연말정산시 합산신고가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 스스로 2024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2023년귀속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 확인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며, 잘못된 금액 또는 서류 제출로 인하여 회사에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본인의 책임으로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2023년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기본공제	1.본인 공제	✓ 공제대상 : 본인 / 공제금액 :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2.배우자 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 ✓ 공제금액 : 150만원		
	3.부양가족 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① 연령의 제한 (장애인은 : 연령 제한 없음), 남, 여 60세 이상(1963.12.31.이전 출생), 20세 이하(2003.1.1.이후 출생) (위탁아동 18세미만) ✓ 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가정위탁보호확인서
추가공제	1.경로우대자 공제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 만70세(1953.12.31.이전 출생) 이상인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2.장애인 공제	✓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연령제한 없음)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3.부녀자 공제	✓ 공제대상 :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제금액 : 5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4.한부모가족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한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 급여에서 일괄 공제 납부 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음.		홈택스 간소화자료
특별소득공제	1.건강보험료등 공제	✓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필요		홈택스 간소화자료
	2.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40%), 240만원 한도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해당 - 주택당첨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안 됨. ②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인정) ③ 2024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근로자→해당 금융기관)		저축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원리금상환액×40%), 400만원 한도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임차를 위하여 ③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일정요건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본인명의) ④ 차입금 = 전세임차 = 신청인 이어야 하며,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함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300~1,800만원 한도 ①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거주여부 상관없음)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반드시 전입에 한함)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06~13년:3억/14~18년:4억)(2014.1.1.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가능) ③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④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것일 것 ⑤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003.12.31.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0년 이상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 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본인명의) ✓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불입액 기준 180만원 한도)		저축납입증명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 - 연령제한 없음 ✓ 공제금액 : (사용액-총급여액의 25%) X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30%,대중교통:80% 전통시장:40%(23.4.1~12.31사용분 5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30%(23.4.1~12.31사용분 40%) 신용카드 사용분15%] + [소비증가분]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공제한도액 : 연간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자:연간 250만원, 1억2천만 원 초과자:연간200만원) 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4/1~12/31 전통시장 이용분 : 50% , 1/1~12/31 대중교통 이용분 : 80%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영.체크	30%			
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공제대상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②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합계액)에서 납입할 것 ✓ 공제금액 : 납입한 금액의 40%(한도:240만원),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배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90%, 청년외 70%)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5년, 200만원 한도 감면 ✓ 대상 : 청년(만15세~34세), 청년 외(60세 이상자, 장애인, 동일직장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8세이상의 사람(2015.12.31.이전 출생) 손자녀도 포함 - 공제금액 : 자녀1인(15만원), 2인(30만원), 3인 이상(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확정기여형 사용자부담금 제외) ✓ 공제금액 : 【 [(연금계좌 납입액, 600만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 ,900만원】 X 12%(또는 15%), 총급여5500만(종합소득4500만)이하 15%, 초과 12%	연금납입확인서
특별 세 액 공 제	1. 보험료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 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한도) X 12% 또는 15%(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원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2.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구입(50만원이내), 출산후 산후조리원 1회당(200만원 이내), 보청기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공제금액 : [①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 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X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 (②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 총급여액 X 3%, 700만원 한도)] X 15%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함	의료비영수증등
	3.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직계존속 교육비는 대상 아님) * 공제대상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초.중.고),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 한도), 방과 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학원 및 체육시설은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재활교육을 위한 지급비용, 체험학습비(연30만원).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대출 원리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 공제금액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지급액, 300만원한도) X 15% ○ 대학생교육비 : (지급액, 900만원 한도) X 15% ○ 근로자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발달재활서비스) : 지급액 전액 X 15%	교육비 납입증명서
	4.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 만) ✓ 공제금액 : ㉠ 1천만 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X 15% + 1천만 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X 30% *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X 100% - 기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X 10% + min(기준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X 30% * 법정(지정)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5년(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월세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 =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공제율 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15%/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7%(한도:월세액 연750만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